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정 2006. 11. 01

개정 2010. 11. 01

개정 2014. 04. 01

개정 2015. 04. 01

개정 2018. 02. 01

##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 행위의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용어의 정의

1. “협력회사”라 함은 당사의 등록회사, 당사 현장의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등 당사와 하도급 거래 중인 모든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회사 풀 (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회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회사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회사로 선정·등록된 회사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 취소 등 협력회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Ⅲ. 협력회사 선정 · 운용 실천사항

#### 1. 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회사 선정 및 협력회사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2. 협력회사 선정 · 운용 실천사항

##### 가. 협력회사 선정 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회사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회사 등록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또는 등록 (등록갱신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내 게시판, 전자 매체 (당사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2) 협력회사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등록갱신 대상 회사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또는 등록 심사 개시 30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 (전자 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3) 협력회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 회사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별도 통지한다.

##### 나. 선정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회사 선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선정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회사 선정 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정당한 선정 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 면허 보유 여부
- ②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회사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 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 개발 실적 및 설비 보유 여부

### <부당한 선정 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퇴직 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 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회사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회사 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2)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회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회사와 신규 등록회사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회사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당사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 및 본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서는 입찰 참가 기회를 추가 부여할 수 있다.

## 마. 협력회사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당사는 협력회사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내 게시판, 전자 매체 (당사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바. 협력회사 등록 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회사 등록 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 협력회사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회사 등록 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 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등록 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원가절감 계획, 납품단가인하 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회사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③ 협력회사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협력회사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 기간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④ 협력회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회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재 조치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